새만금특별법의 의미와 개요

-새만금특별법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

1987년 새만금사업 발표 당시
전북종합계획 조감도

2006년 새만금 방조제완공 후

Presented by

원도연/Won Do-Yeon

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

발표순서

- 1987-1991-2007, 새만금 小史
  - -새만금사업 발표에서 기공, 착공에 이르기까지
- 새만금특별법의 의미와 기본방향
  - -새만금특별법의 필요성
  - -새만금특별법의 기본방향과 목표
- 새만금특별법안 주요 개요
  - -법안의 구조/주요 골자/기대효과/추진일정

1987년 12.11 정부 발표로 시작

정부는 11일 89년부터 96년까지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을 실시한다고 확정, 발표했다.
정부는 이날 농수산부를 통해 새만금지구간척 사업 시행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부터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이 사업을 89년 상반기에 세부설계를 확정,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…

… 2천년까지 이 사업이 모두 끝나면 2천년대의 산업화시대의 주거, 위락공간, 인구증가 등 토지 수요에 필요한 국토확장은 물론, 금강하구둑과 방조제 내부의 담수호 등에서 5억9천만톤의 각종 용수확보가 용이해진다…

12月11日 (金曜日) 【日刊】

全北日報

새萬金지구干拓89년착공

8개년 計劃 총9千7百億원 투입

96년까지 沃溝·邊山間 防潮堤 34㎞ 축조

4만2천ha 陸地化 農工業用水도 확보

이경내과 의원

■ 1991년 11.28 새만금간척종합개발 기공식

…노대통령은 10분 동안에 걸친 치사에서 '자신이 공약한 이 사업을 착공하는 감회가 매우 뜻깊다'고 밝히고 이 사업이 완공되면 전북이 한국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연설.

연설도중 정부가 계획기간내 마무리 짓겠다고 언급한 부분과 한국산업을 주도해나갈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대목 등 전북의 비전이 제시된 내용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4차례나 박수를 받기도…

1991.11.28 기공에서 2006.4.21 방조제완공까지

- **21세기 한국산업 주도 기대**
  - -1989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그로부터 3년 후인 1991년 11월 착공
- **1994년 7월 제3호 방조제 물막이 완료**
- **1998년 12월 제1호 방조제 준공**
  - -1999년 5월 시화호 오염사건의 여파로 공사중단. 민관공동조사
  - -2001년 5월 25일 정부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 결정
  - -2003년 7월 15일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소송 수용되면서 공사중지
- **2006년 4월 21일 제2호 방조제 물막이 완료**

2006.4.21 새만금방조제 완공

- 1991년부터 15년이 걸린 대역사의 완공
- 사상 최대 역사로 기록. 세계 간척사의 한 획을 기록
- 방조제 완공은 새만금사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

15년만의 새만금방조제 완공

다시, 새만금을 묻는다

- 새만금사업의 국가적 의미를 재확인해야 할 시점…
- 1억2천만평에 이르는 3無(규제, 소유, 민원) 3多(지정학적 위치, 용수, 비전)의 땅에 대한 국가적 관심 필요
- 새만금은 궁극적으로 전북의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며 한국의 21세기를 향한 비전 프로젝트의 땅

새만금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-1

새만금 개발의 현행 법적절차

- 현재의 새만금은 '바다를 매립' 하는 단계
  -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음

- 새만금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법률
  -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  -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  -관광진흥법,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
  -위 법률에 수반된 시행령,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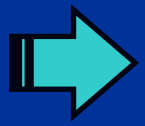

- 수많은 법령과 개발주체 및 개발절차를 단순화시킬 필요
-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특별법 필요
  -신속하고 일관된 개발 필요
  -새만금사업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함

새만금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-2

새만금의 변화, 미래를 준비하라

- 1991년 새만금 사업의 최대목적은 '안정적인 농지확보'
  -한국농업에 대한 산업적 인식이 변화
  -간척으로 조성된 1억2천만평의 땅은 복합용지로 사용되어야

- 새만금지역의 용도에 대한 국가적 입장 변화
  -정부차원의 내부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연구용역 실시
  -대중국(환황해 경제권)에 대비한 전략거점으로서의 의미
  -전북의 산업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지로서의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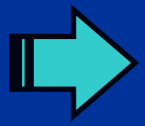

- 정부 확정발표를 남기고 있는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 조응
  -복합산업용지로 전환될 새만금 내부개발에 중장기적 대응

-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유도
  -가장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개발 프로그램 마련

새만금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-3

새만금, 불확실성에서 예측가능성으로

- 1987년 사업발표 이후 중단과 공사재개의 끝없는 반복
  - -타의에 의한 반복되는 사업중단과 재개는 전북의 불안야기
  - -정부부처간의 의견대립, 부처별 계획수립에 따른 행정력낭비
  - -재원조달의 불투명, 향후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불투명
- 새만금은 지금 '감성'의 문제
  - -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와 믿음은 무조건적인 감성
  - -새만금에 대한 정확하고 이성적인 평가와 전망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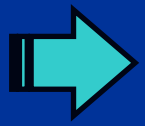

- 새만금특별법으로 새만금사업을 예측 가능한 상수로
  - -새만금사업이 전북발전전략의 상수(Default)가 되게함
  - -새만금의 비전이 확정되어야 전북의 진전된 발전전략이 가능
- 새만금사업을 감성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으로
  - -새만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대

새만금 특별법안 개요

전 라 북 도
www.jeonbuk.go.kr

Ⅰ. 법안 구조 : 총 9장 46조

장 별	내 용
제1장: 총 칙 〔§1-§3〕	• 목적, 정의, 다른 법률과의 관계
제2장: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의 수립 등〔§4-§6〕	• 종합개발계획의 입안 • 종합개발계획의 승인
제3장:새만금종합개발예정 지구의 지정 등 〔§7-§10〕	• 예정지구의 지정.지정절차 및 해제 • 예정지구내 행위 등의 제한 등
제4장:새만금종합개발사업 의 실시 등〔§11-§24〕	• 사업시행자의 지정·지정취소 • 실시계획의 승인, 인·허가 등의 의제 • 기반시설 설치,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
제5장 : 친환경개발을 위한 특례 등 〔§25-§28〕	• 환경보전관리계획의 수립·지정 •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조치

Ⅰ. 법안 구조 : 총 9장 46조

장 별	내 용
제6장 :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〔§29-§33〕	• 국공유재산 양여, 채권의 발행, 외자도입 •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, 보조금의 교부 • 지방교부세의 지원
제7장 :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등 〔§34 -§41〕	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특례 • 보세구역의 지정요청 • 토지·건물 등의 임대 및 매각 등의 특례 • 공장설립 및 건축 등의 특례 • 투자유치회사의 지원 • 외국인의 토지취득의 특례
제8장 : 보칙〔§42-§44〕	•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의 설치 • 새만금사업관리단의 설치 • 권한의 위임
제9장 : 벌칙〔〔§45-§46〕	• 벌칙 양벌규정

Ⅱ. 주요 골자

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

- 종합개발계획입안권을 도지사가 가지고, 승인권을 농림부 장관에게 부여 〔안 제4조 내지 제5조〕

- 사업시행자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민간 투자자로 함 〔안 제11조〕

Ⅱ. 주요 골자

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

- 새만금 지역을 포함한 일정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례를 둠 (안 제34조 내지 제41조)

※ 특례 : 보세구역지정, 토지·건물임대매각
공장설립, 자본재 검토확인,
외국인 토지취득 등

Ⅱ. 주요 골자

교통 및 환경 보전

- 새만금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 수립
  (안 제24조)

- 환경보전계획수립 및 수질오염원 차단
  (안 제26조 내지 제28조)

Ⅱ. 주요 골자

개발사업을 위한 지원

- 40개 인.허가 의제처리로 개발절차 간소화
  〔안 제14조〕
- 기반시설을 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하여 설치
  〔안 제16조〕
-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및 외자 도입
  〔안 제29조〕
- 토지를 도에 무상양여, 도.사업시행자에게 임대,
  저가매각 사업시행자는 저가로 토지 분양
  〔안 제30조〕

Ⅱ. 주요 골자

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 및 실무 새만금사업관리단 설치

- 의사결정기구인 새만금종합개발위원회 설치
  〔안 제42조〕

- 농림부·도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사업관리단 설치
  〔안 제43조〕

Ⅲ. 기대 효과

효과 1 : 종합개발계획입안권 확보

- 새만금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입안권을 도에서 확보함으로써 도민기대에 부합하는 개발여건 마련
  - 주요내용 : 복합영농·복합산업·종합관광단지, 주요기반시설 등

-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지역에 포함하여 개발 가속화

Ⅲ. 기대 효과

효과 2 : 새만금지역 경제특례 도입

- 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하여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만의 특례 마련
- 필요시 국가에서 도에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.임대 장치 마련
- 외국기업 등 유치를 위하여 토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장치 마련

Ⅲ. 기대 효과

효과3 : 안정적 사업추진 법적·제도적 장치 마련

- 새만금종합개발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마련
  - 농림부 주관하에 농지 포함, 전체적인 사업계획, 예산 확보, 부처 협의·조정 등 사업 추진
-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로 개발절차 대폭 간소화로 개발 가속화
- 개발에 필요한 채권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
- 새만금개발위원회 설치 및 전담추진기구 구성·운영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박차

Ⅳ. 추진 일정

’07. 년내 국회 통과

협 조

’07.3.13 국회 제출

’07. 4월 법안 심사

’07. 3월	’07. 3. 9일	’07. 3. 12일한
법안 확정	발의대표의원 선정	발의(찬성)의원 확보